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94호 2020. 10. 29.(목)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306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1
- 사천시 공고 제1311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 사천시 공고 제1312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4
- 사천시 공고 제1313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7
- 사천시 공고 제1314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6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공고 제2020-1306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외 1건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 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 2. 제정이유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나. 통합상표 사용신청 자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통합상표 사용 신청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통합상표의 지정, 심의 제외 및 제품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통합상표 사용기간 및 사용료, 관리 책임 및 검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바. 사용중지·정지·지정취소 및 청문에 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통합상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㉔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 가. 규칙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통합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통합상표 예비심사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사 천 시 공 보

제 694 호

##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860,  
FAX : 831-6053)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상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별표와 같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중점육성 품목”이란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 수준 등이 우수하여 다른 품목보다 먼저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자격)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지유통정책에 따라 공동선별하거나 공동출하 또는 공동계산하는 방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품

제4조(품질기준) ① 통합상표의 사용 제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품목인 경우 시장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심의)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의 사용·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생산 및 출하 기관의 관계자, 생산자단체 관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 등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유통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 결과 통합상표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12조(심의 제외)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에서 연구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
2. 산지통합마케팅조직(농산물을 품목별로 통합하여 판매·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에서 출하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사용제품의 공개)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통합상표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5조(사용의 표시 등)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에 통합상표의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포장박스, 스티커 등 포장재의 제작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책임)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상표의 관리에 관한 책임과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단체 또는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회원 또는 해당 기업의 직원 중 1명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관리책임자는 해당 제품(단체일 경우 전체 회원의 제품을 말한다)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품의 검사) ①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등 안정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정을 요청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신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품질관리책임자에게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구매자에게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중지 및 사용정지)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통합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2.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조사공무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선별, 출하, 유통 등을 조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지 처분을 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용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중단, 표준출하규격 폐지 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도매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반기 2회 이상 농약을 검출한 경우
5. 전국도매시장으로부터 품질, 표시사항 등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격 품으로 통보받은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인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통합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9.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통합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통합상표가 표기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고, 지정 취소일부터 2년 이내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청문)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사용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94 호

[별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제2조제1호 관련)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신 청 자			주 품 목	사 용 신 청 량 (매)	서 명·날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성 별				

○ 필수 이행사항

- 통합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농산물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 사용등급은 농산물표준규격상의 “상” 품에만 사용하고, 내용물의 품질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및 통합상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별지 제2호서식]

##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성별		생년 월일		전화	
	조직명							
	주소							
지정내역	지정번호							
	품목명							
	지정기간							
연장내역	연장기간							
	사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별지 제3호서식]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

- 지정번호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지정품목 :
- 지정기간 : 20 . . . ~ 20 . . . ( 년간)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별지 제5호서식]

## 통합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성별		생년 월일		전화	
	조직명							
	주소							
지정내역	지정번호							
	품목명							
	지정기간							
사유	중지기간							
	사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 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의 심의)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② 별표에 따라 심의 결과 총 12개 항목 중 평점 3점 이하의 항목이 2개 이하이고, 항목별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본다. 다만, 항목 중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의 없이 부적합 처리한다.

③ 통합상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 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심의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별표]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심의 기준표(제2조 관련)

	심의자	소속	성 명:	(인)
항 목	배점	심 의 기 준		평점
필수요건		○ 품질규격화를 위한 공동선별시설 확보 또는 공동선별 실시여부		
1. 영농경력	8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6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3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차 별 성	10	○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7	○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 요소가 보임		
	3	○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		
3. 대외 신용도	8	○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가 매우높음		
	6	○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 높음		
	3	○ 대외 인지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8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 판매처 일부 확보, 적정 재배규모 유지		
	3	○ 판매처 미확보, 기본적 재배규모 유지		
5. 생산 포장 입지	8	○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6	○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3	○ 위 사항에 적합하지 못한 곳		

# 사 천 시 공 보

제 694 호

항 목	배점	심 의 기 준	평점
6. 생산 기술 수준	8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함	
	6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함	
	3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임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8	○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6	○ 대체로 양호하고 적절해보임	
	3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	8	○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GAP인증 시설)	
	6	○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3	○ 선별만 자체관리, 유통 등 사후관리가 미흡	
9. 열 의 도	10	○ 행정·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과 규격화를 적극 실행함	
	7	○ 행정·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3	○ 교육훈련 및 고품질 상품생산에 관심있음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여부	8	○ 연 2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 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6	○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 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3	○ 자체 품질검사 실시	

# 사 천 시 공 보

제 694호

항 목	배점	심 의 기 준	평점
11. 통합상표 사용 의식수준	10	○ 브랜드 사용목적, 브랜드 관리의식, 브랜드 사용계획 등 명확한 브랜드 사용의식을 가지고 있다.	
	7	○ 기본적인 브랜드 사용의식은 있으나 구체적 사용계획, 관리의식 등은 미흡하다.	
	3	○ 브랜드 사용의식이 대체로 미흡하다.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최대 6	○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실적,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매건당 2점 부여	
계			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관 련 법 규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5.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마을어장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시설 설비 지원사업
9.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움, 국내·외 교육훈련 등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수산물의 시장 격리를 위한 지원 사업
11. 사천몰(쇼핑몰)전자상거래,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12. 농수산물 직거래,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
13. 농수산물 규격출하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14. 농산물우수관리(GAP)활성화 지원사업
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공고 제2020-1311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이·통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근거를 마련하여 리·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임무 추가(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를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서류의 송달 협조” 로 변경
-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 을 추가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나. 이·통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이·통·반장의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2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과급”을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가구 부터”를 “20가구부터”로, “구성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락형태”를 “취락 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개반 부터”를 “3개반부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락형태”를 “취락 형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 2 장 이·통장”을 “제2장 이·통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각종”을 “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으로 하고, 같은 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복구 등 지원

제5조제2항 중 “복종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이외의 목적에”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한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3조의 2의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규정을” 을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의2를” 으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통장의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  
행할 수 있다.

1. 월정수당(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보상금
3. 설, 추석,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는 위문품 및 기념품
4. 현장 활동비
5.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6. 모범 이·통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② 이·통장이 변경 임명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월정수당 및 제1항4호의  
현장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임명된  
이·통장에게 지급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통장” 을 “읍·면·동장은 이·통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고이상” 을 “금고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태만히” 를 “게을리”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사  
실이 있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제10조 중 “공무이외” 를 “공무 이외” 로, “시는” 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필요시” 를 “필요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장” 을 “이·통장” 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질” 를 “해임”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 3 장 반 장” 을 “제3장 반장” 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를 “주민여론 보고”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원공동” 을 “반원 공동” 으로,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 를 “행정 지원사항의 공정한 처리”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반내” 를 “반 내”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무이외의 목적에” 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으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를 “사항이 있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내” 를 “반 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필요시” 를 각각 “필요할 때” 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반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의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각 호를 준용한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다. 이 경우 “이·통” 을 “반” 으로, “이·통장” 을 “반장” 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제 4 장 보 칙” 을 “제4장 보칙”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 1 장 총 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동·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u>과급</u>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p> <p>② (생 략)</p> <p>③ 반의 획정기준은 <u>20가구</u> 부터 50가구까지로 <u>구성한다</u>.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u>취락형태</u>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④ 리·통은 <u>3개반</u> 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u>취락형태</u>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제5항 ----- ----- ----- -----.</p> <p>제2조(하부조직) ① ----- <u>전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가구부터</u> ----- ----- <u>한다</u>. ----- ----- <u>취락 형태</u>----- -----.</p> <p>④ ----- <u>3개반부터</u> ----- ----- <u>취락 형태</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2 장 이·통장</u></p> <p>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이·통장</u></p> <p>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 행	개 정 안
<p>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p>1. ~ 6. (생략)</p> <p>7. <u>각종</u> 서류의 송달 협조</p> <p>8. (생략)</p> <p><u>&lt;신설&gt;</u></p> <p>9. (생략)</p> <p>제5조(복무) ① (생략)</p> <p>② 이·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u>복종하여야</u> 한다.</p> <p>③ (생략)</p> <p>제6조(비밀엄수) ① (생략)</p> <p>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u>공무이외의 목적</u>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그 밖에 비밀엄수에 <u>관한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3조의 2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u> -----</p> <p>8. (현행과 같음)</p> <p>9. <u>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복구 등 지원</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5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따라야</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비밀엄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공무 이외의 목적</u> <u>으로</u> -----.</p> <p>③ ----- <u>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의2를</u> -----</p>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실비보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상여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 추석, 기념일 등에 위문품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⑥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통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p> <p>제9조(이·통장의 해임)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제7조(이·통장의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월정수당(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li> <li>2.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보상금</li> <li>3. 설, 추석,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는 위문품 및 기념품</li> <li>4. 현장 활동비</li> <li>5.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li> <li>6. 모범 이·통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li> </ol> <p>② 이·통장이 변경 임명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월정수당 및 제1항제4호의 현장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임명된 이·통장에게 지급한다.</p> <p>제9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이·통장----- ----- ----- -----.</p> <p>1. (현행과 같음)</p>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 행	개 정 안
<p>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u>금고이상</u>의 형이 확정된 때</p> <p>3. 임무를 현저하게 <u>태만히</u> 한 때</p> <p>4.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u>7.</u> (생 략)</p> <p>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u>공무이외</u>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u>시는</u>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다.</p> <p>제11조(근무) ① · ② (생 략)</p> <p>③ 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u>필요시</u>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p> <p>④ <u>이·장</u>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제12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u>경질</u>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회인 참석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2. ----- <u>금고 이상</u> -----</p> <p>3. ----- <u>게을리</u> -----</p> <p>4. ~ 6. (현행과 같음)</p> <p><u>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u></p> <p><u>8.</u> (현행과 같음)</p> <p>제10조(단체행동 금지) ----- <u>공무이외</u> ----- ----- <u>때에는</u> -----.</p> <p>제11조(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필요할 때</u> -----.</p> <p>④ <u>이·통장</u> ----- -----.</p> <p>제12조(사무인계·인수) ----- <u>해임</u> ----- ----- -----.</p>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 행	개 정 안
<u>제 3 장 반 장</u>	<u>제3장 반장</u>
<p>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u>각호</u>의 업무를 처리한다.</p> <p>1. (생략)</p> <p>2. 행정시책의 홍보와 <u>주민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u></p> <p>3. ~ 4. (생략)</p> <p>5. <u>반원공동</u>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u>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u></p> <p>6. (생략)</p> <p>제15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반내</u>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비밀엄수) ① (생략)</p> <p>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u>공무이외의 목적</u>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7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u>범위</u>에서 회의참석수당·상여금·보상금·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임무) ----- ----- <u>각호</u>-----.</p> <p>1. (현행과 같음)</p> <p>2. ----- <u>주민여론 보고</u></p> <p>3. ~ 4. (현행과 같음)</p> <p>5. <u>반원 공동</u>-----<u>행정 지원사항의 공정한 처리</u></p> <p>6. (현행과 같음)</p> <p>제15조(회의) ① ----- ----- <u>반 내</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비밀엄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공무 이외의 목적</u>으로 ----- -----.</p> <p>제17조(실비보상) ----- <u>범위에서</u> ----- -----.</p>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반상회) ① 반장은 <u>반장의 임무 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u>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u>반내</u>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p> <p>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로 개최하고 수시회는 <u>필요시</u>에 개최한다.</p> <p>④ 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u>필요시</u>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제20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li> <li>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li> <li>3.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li> <li>4.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li> </ol>	<p>제19조(반상회) ① ----- <u>주민에게 알려야 할</u> ----- ----- <u>사항이 있는 경우</u> ----- --.</p> <p>② ----- <u>반내</u> ----- ----- .</p> <p>③ ----- ----- ----- <u>필요할 때</u> ----- .</p> <p>④ ----- <u>필요할 때</u> ----- .</p> <p>제20조(반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의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통”을 “반”으로, “이·통장”을 “반장”으로 한다.</p>

# 사 천 시 공 보

제 694 호

현 행	개 정 안
<p>5. <u>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u></p> <p>6. <u>그 밖에 품위손상 등 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4 장 보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칙</u></p>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공고 제2020 - 1312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2. 주요내용

-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 사 천 시 공 보

제 694호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 후 행정구역		필지 수	면적(m <sup>2</sup> )	비고(위치)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계					96	22,417	
1	동서동	대방동	동서동	서동	33	8,179	대방우체국 주변
2	선구동	선구동	동서금동	동금동	31	2,484	팔포교 주변
3	별용동	용강동	별용동	별리동	8	612	삼천포사우나, 삼보신우타운 인근
4	별용동	별리동	별용동	용강동	4	942	삼보신우타운
5	남양동	노룡동	남양동	신벽동	12	5,342	남양 만남의 광장
6	남양동	신벽동	남양동	노룡동	7	4,415	국도3호선(남양 만남의 광장 앞)
7	남양동	대포동	남양동	노룡동	1	443	노룡소류지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94 호

<현 행>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개정 17.9.29.>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 정의리 중 평화리로 편입된 지번(314-13, 314-7, 320-6, 321-3, 322, 323, 324, 324-2, 324-3, 25-5, 326-2, 327, 327-1, 328, 328-1, 329, 330, 331-1, 331-2, 332, 333-1, 334-10, 334-11, 334-12, 334-3, 357-23, 357-26, 358-1, 358-4, 358-6, 358-7, 359-5, 390-13, 393-14, 393-46, 393-47, 393-48, 393-49, 393-50, 393-52, 393-61, 394-10, 394-44, 394-45, 394-46, 394-47, 394-49, 394-50, 394-51, 394-52, 394-53, 418-5, 419-1, 421,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제외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 평화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45-14, 45-15, 45-16, 47-3) 제외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 사주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261-7, 279-16, 462-1) 제외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 구암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 1773-4, 1778-1, 1778-3, 1780-1, 1780-2, 1780-20, 1780-6, 1780-7, 1781, 1781-3, 1782-1, 1782-10, 1782-11, 1782-12, 1782-13, 1782-14, 1782-15, 1782-16, 1782-20, 1782-5, 1782-7, 1782-9, 1783, 1783-1, 1783-2, 1783-3, 1783-4, 1783-5, 1784, 1784-1, 1784-10, 1784-11, 1784-12, 1784-13, 1784-14, 1784-15, 1784-16, 1784-17, 1784-18, 1784-19, 1784-2, 1784-20, 1784-21, 1784-22, 1784-23, 1784-24, 1784-25, 1784-26, 1784-27, 1784-28, 1784-29, 1784-3, 1784-31, 1784-32, 1784-33, 1784-34, 1784-35, 1784-36, 1784-39, 1784-4, 1784-40, 1784-41, 1784-42, 1784-44, 1784-5, 1784-6, 1784-7, 1784-8, 1784-9, 1785-1, 1785-3, 1786-2, 1789-3, 1793-1, 1793-3, 1795, 1795-1, 1799-3, 1799-4, 1784-30, 1786-3) 제외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중 천 리	중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 통양리 중 신촌리로 편입된 지번(478-4, 478-5, 478-6, 490-2, 491, 491-1, 493, 494-1, 495-1, 496-1, 513-7, 513-8, 515, 515-1, 516-1, 518-1, 518-2, 518-3, 518-4, 518-5, 518-6, 518-7, 518-8, 518-9, 518-10, 518-11, 518-12, 519, 520, 522-1, 522-2, 522-3, 522-4, 522-6, 522-7, 529-3) 제외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북 리	신북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홍 사 리	홍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향 리	중향리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립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량 리	구량리 일원
	자 해 리	자해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별 용 동		별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개정안>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춘 리	학춘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종 천 리	종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홍 사 리	홍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향 리	중향리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립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량 리	구량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 694 호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 대방동에서 서동으로 편입된 지번(141-1, 141-2, 141-9, 141-10, 142-1, 142-2, 142, 143-3, 143-4, 143-5, 144-1, 144-3, 144-4, 144-5, 144-6, 146-2, 146-4, 146-6, 146-7, 146-8, 146-9, 146-10, 146-11, 148-2, 148-3, 148-4, 148-5, 149-1, 149-2, 149-3, 150-3, 750-1, 750-2) 제외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 선구동에서 동금동으로 편입된 지번(14-1, 14-2, 14-3, 14-4, 14-6, 14-8, 14-11, 14-12, 14-14, 14-15, 14-16, 14-17,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30, 14-32, 14-33, 14-34, 14-35, 14-38, 14-39, 15-4, 331-2, 331-3, 333-4) 제외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별 용 동		별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 별리동에서 용강동으로 편입된 지번(7, 7-3, 8, 573) 제외 · 용강동에서 별리동으로 편입된 지번(663-2, 663-3, 800-9, 890-4, 915-15, 916-1, 917-1, 917-3) 제외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흥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 신벽동에서 노룡동으로 편입된 지번(산44-2, 산44-3, 산44-4, 산44-5, 산44-8, 산45-2, 산45-6) 제외 · 노룡동에서 신벽동으로 편입된 지번(487-10, 487-13, 488-10, 488-11, 488-13, 산6-15, 산6-16, 산7-1, 산8-4, 산11-8, 산22-3, 산22-4) 제외 · 대포동에서 노룡동으로 편입된 지번(147-3) 제외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공고 제2020-1313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다.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라.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마.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바. 장학금 지급 및 중복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사. 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 성적이 직전 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본다.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1호 단서의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② 장학생은 이·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하도록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본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라 일시 지급한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2학기 개시 전일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50%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모가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94 호

[별표]

##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

### 1. 총점 배분

합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통장 경력	이·통장 상훈	가산점(항목당 5점)
100	60	30	10	1. 수급자 여부 2. 다자녀(3명 이상) 가구

### 2. 항목별 심사기준

####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고등 학생	상위 10% 이내 평균 석차 1등급	10% 초과 20% 이내 평균 석차 2등급	20% 초과 30% 이내 평균 석차 3등급	30% 초과 40% 이내 평균 석차 4등급
	대학생	A <sup>0</sup> 이상	A <sup>-</sup>	B <sup>+</sup>	B <sup>0</sup> , B <sup>-</sup>
예·체능, 또는 기능분야	국가(청소년)대표 급, 각종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 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 교육감 표창 수상자	시의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	시·군 단위 대회 입상자
점수	60		50	40	30

※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석차로 한다.

#### 나. 이·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0	28	26	24	22	20

#### 다. 이·통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상훈 없음
점수	10	9	8	7	5

#### 라. 가산점: 항목별 5점

항목	수급자 여부	다자녀(3명 이상)가구
점수	5	5

※ 수급자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공고 제2020-1314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식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구현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나.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사람”을 “학생”으로,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사천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u>사람</u>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u>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u>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u>」의 시행에-----.</p> <p>제2조(장학금의 신청) ----- ----- <u>학생</u>----- ----- <u>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u>----- -----.</p> <p>1. ~ 4. (현행과 같음)</p>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행)

[별지 제1호서식]

## 장 학 금 신 청 서

### 1. 보호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이·통장경력
( )읍.면.동 ( )이.통장	한글 : 한자 :			년 월 일부터 . . 현재까지 ( 년 월)

### 2.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학 교 명	학년/반	보호자 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성적 또는 특기개요
한글 : 한자 :		/			

사천시 ( )학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합니다.

붙임 :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개정안)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장 학 금 신 청 서

### 1. 보호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이·통장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연 락 처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훈격		수상일자		공적분야

###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학 년 / 반 학 년 / 학과	학 년 / 반 학 년 / 학과	보 호 자 와 의 관 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성 적 또는 특 기 개 요	

### 3. 추가 기재사항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없음( )		
	있음( )	• 장학금 종류:	• 수혜기간:
가 산 점	수급자 여부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여부

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li> <li>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li> <li>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li> <li>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여부: 수급자 증명서,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li> </ul> </li> </ol>
------	---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작성요령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 ② 소속: 이·통장의 주소지 해당 읍·면·동을 기재함
- ③ 직위: 이·통장 직위를 기재함
- ④ 이·통장 경력: 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이·통장 연속근무기간을 기재함  
※ 불연속적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불가
- 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기재
- ⑥ 주 소: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재함
- ⑦ 계좌번호: 장학생으로 선발 시 장학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기재(이·통장 또는 자녀 계좌)
- ⑧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5년 이내 시장 이상의 상훈 수상내역을 기재하되, 상위 1개 상훈 수상내역만 기재
- ⑨ 성적 또는 특기개요
  -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평균 석차 또는 석차등급을 기재하고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함
- ⑩ 타 장학금 수혜여부: 정부 또는 타 기관, 단체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재하고, 타 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간, 지급금액을 기재함.  
※ 수령여부 및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
- ⑪ 가산점
  - ㉠ 수급자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 ⑫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여부: 3자녀 이상 산정 시 입양자녀 포함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행)

[별지 제2호서식]

## 장 학생 추천서

학교명		학 년		반		보호자 성 명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 별	남.여

1. 학과성적 평균 :

2. 장학생으로서 적격여부 (학습태도, 품행 등) :

3.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직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개정안)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장학생 추천서

### 1. 장학생 인적사항

(고등학생 추천용)

학 교 명		학 년 / 반	학년/ 반	보 호 자 명	
성 명 (한 자)	( )	생 년 월 일	. . .	성 별	
주 소					

### 2. 성적 또는 특기 개요

교 과 성 적 평 균		학 년 석 차	명/ 명	평 균 석 차 등 급	
대 표 종 목		종 류		대 표 기 간	
대 회 명		입 상 내 역 (훈 격)		입 상 일 자	

### 3.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직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뒷면>

## 작성요령

- ① 본 추천서는 고등학교 장학생인 경우 작성합니다.
- ② 교과 성적 평균은 직전 학년의 평균 성적을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석차를 기재합니다.
- ③ 학년 석차는 직전 학년의 재적학년 정원에 대한 석차를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석차를 기재합니다.
- ④ 대표종목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 ⑤ 종류는 국가(청소년)대표, 시·도 대표, 시의 대표를 기재합니다.  
예)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 경상남도 대표, 사천시 대표
- ⑥ 대표기간은 해당 대표로 활동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⑦ 대회명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에 참가하여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대회명을 기재합니다.
- ⑧ 입상내역은 ⑦대회에서 입상내역을 기재하며, 이 경우 3위 이상으로 입상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 ⑨ 입상일자는 ⑧에 수상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추천대상자

- ① 성적 우수자
  - 고등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의 교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 또는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함.
- ②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③ 추천 제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현행)

[별지 제4호서식]

## 사천시 이·통장 자녀장학생 추천서

### 1. 보호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이.통장경력
( )읍면동 ( )이.통장	한글 : 한자 :			년 월 일부터 . . 현재까지 ( 년 월)

### 2.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보호자와의 관 계	생년월일 (성별)
한글 : 한자 :					

### 3.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면·동장

직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94호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